■ 민족문화연구 제87호(2020.05.31),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pp.9-37.
http://doi.org/10.17948/kcs.2020..87.9

# 고려 전기 法號의 사용과 그 운영의 특징*

박윤진(朴胤珍)**

목 차

1. 머리말
2. 고려 전기 法號의 사여
3. 고려 전기 法號 운영의 특징
4. 맺음말

## 국문초록

고려 전기 법호는 僧職이나 僧階와 함께 승려에게 국가가 하사한 공적 지위였다. 고려 전기의 법호는 중국의 '師號'가 大師라는 직함과 법호를 하사하는 방식이었던 것과 관련된다. 다만 고려 전기는 중국식 '師號'보다 고려의 독특한 제도인 僧階를 중시했기 때문에 법호와 승계를 연칭하여 사용하였다.

법호는 法稱이나 懿號로도 불렸으며, 勳號·功號와 같은 의미를 가졌다. 현재 확인된 사료에 근거한다면 이들 법호 수여의 대상자는 최하위 승계인 大德 이상이었다. 최소 2자에서 최대 34자의 법호를 하사받은 사례가 있으며, 해당 승려의 덕행을 드러내기 위해 주어졌다고 한다. 한편 다수의 승려에게 일시에 법호가 사여되면서 동일한 법호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5B5A07059883).
** 고려대 한국사학과 강사.

를 가진 승려가 동시기에 활동하기도 했다.

국왕의 즉위나 태후의 임명과 같은 국가적 의례 참석자나 사면령이 내려지는 시기에 관료들에 대한 포상과 함께 승려에게는 승계나 승직을 주기도 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보상은 한정적인 승계의 단계와 승직의 수 때문에 한계를 가졌다. 반면에 법호는 여러 차례 하사된다고 해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 승계처럼 계위를 가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여러 개의 법호를 누적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승려의 공적 지위를 보증해주었다. 법호가 功號나 勳號와 같은 의미를 가진 만큼 국가에서 하사한 법호의 보유와 누적은 이를 가진 승려의 지위를 보장해주었다. 게다가 특정 법회에 참여한 이에게 특정 법호를 하사하는 방식마저 있었다면, 법호를 통해 해당 승려가 참여한 법회나 공로를 파악할 수도 있어 그의 공로를 확인하는 방법도 되었을 것이다.

주제어: 高麗, 法號, 師號, 僧階, 大師.

## 1. 머리말

전근대 사람들은 이름과 함께 字・號를 가지기도 하고 고위 관료나 공훈을 세운 이는 공신호를 받기도 하며 사후 諡號를 추증받았다. 고려시대 승려들 역시 승려로서의 이름인 法名과 함께 자칭・타칭의 호를 가지기도 하며 王師・國師인 경우는 시호를 받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승려들은 국가로부터 法號를 하사받기도 했다. 그런데 승려에게 法號라는 단어는 다양한 용례로 사용되고 있다. '吾宗의 禪和尙으로 法號는 審希[吾宗禪和尙法號審希]'[1]나 '大師의 法號는 坦文이다[大師法號坦文]'[2]와 같이 승려로서의 이름인 법명을 法號라고 표현한 사례가 있기도 하다. 또한 많이 알려진 것처럼 '牧牛子 知訥'이나 '無衣子 惠諶'처럼 自號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중 검토하고자 하는 법호는 自號와 같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특정 승려에게 하사된 것이다. 大覺國師 義天은 생전에 祐世僧統으

1) 「璨幽碑」, 『韓國金石文大系』 卷5—京畿道編, 圓光大學校 出版局, 1988. 고승비문은 『朝鮮金石總覽』, 『韓國金石全文』, 『韓國金石文大系』 등을 참고하였지만, 대표로 하나의 전거만을 표시한다. 전거마다 고승비문의 이름을 다르게 표기하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법명으로 그 비문을 표시하였다. 법명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시호 등으로 대신하여 표시한다. 이하 동일하다.

2) 「坦文碑」, 『增補 韓國金石文大系』 卷2—忠淸南北道編, 圓光大學校 出版局, 2000.

로 호칭되었는데, 이는 僊鳳寺에 세워진 「義天碑」에서 '호를 하사하여 우세라 하고 職을 주어 승통으로 삼았다[賜號祐世 授職爲僧統]'라고 표현한 것처럼 국가에서 祐世라는 법호를 하사[賜號]한 것이다. 이런 사례는 '師號'와 관련된다. '師號'는 大師라는 지위와 함께 2字로 구성된 法號를 연결시켜 某大師라 지칭하는 것인데, 師號를 하사한다는 의미로 '賜師號'로도 불렸다. '師號'는 고려 후기에 그 사용이 분명하게 확인되지만 고려 전기에는 중국식 '師號'보다 승계를 중시하여 '師號'의 사용이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3] 그러나 우세승통의 사례처럼 승계와 함께 법호를 연칭하여 사용한 경우가 다수 존재하고, 이에 대해 '법호를 하사한다[賜號]'고 표현하거나 '법호를 더해주었다[加法號]'라고 서술한 사례가 있어 고려 전기에도 국가에 의해 승려에게 法號가 하사되었음이 확인된다. 즉 고려 전기에는 후기와 달리 승계가 아닌 '大師'라는 師號의 사용이 분명히 드러나지는 않지만, 대신 師號와 함께 사여되었던 법호가 고려에서 시행한 僧階와 연칭되어 사용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고려 전기에 국가로부터 승려에게 공적으로 하사된 法號의 사례와 그 운영의 특징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로 고려 초에 선종 고승들이 입적한 후 탑과 비를 건립하면서 시호로 하사된 某大師의 경우는 법호가 아니고 이후 왕사·국사로 추봉된 이들이 받은 시호와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여 검토하지 않았다. 국가로부터 하사된 호칭이기는 하지만, 생전에 하사된 것만을 법호로 파악하여 살펴보겠다. 또한 고려 후기에는 법호 운영의 변화가 보이는 만큼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으로 미루고자 한다.

## 2. 고려 전기 法號의 사여

고려 전기에는 祐世僧統의 사례와 같이 법호를 하사받은 경우가 꽤 있는데, 이를 분명히 표현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자.

---

3) 朴胤珍, 「高麗前期 '賜紫沙門'의 의미와 역할」, 『역사민속학』 제49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15; 「고려 후기 '師號'의 운영과 그 특징」, 『歷史教育』 제139집, 역사교육연구회, 2016.

㉮ 갑오년 季春에 [임금의] 가마가 奉恩寺에 행차하여 拜 [결락] 임금이 [왕사로 임명]하고자 하여 이러한 명령이 있었으나 스님이 간절히 사양하였다. [결락] 또 法號를 더하여 悟空・通慧라고 하였다. 스님의 법호로 처음에 慈應・究理를 받았는데 그 후로 여러 차례 演奧, 正觀, 圓應, 法印을 추가하였다. 지금 또 4자를 추가하니 모두 [스님의] 悳行을 드러낸 것이다.4)

사료 ㉮는 갑오년인 예종 9년(1114년) 樂眞의 왕사 책봉 중에 일어난 일이 기록되어 있으며 『高麗史』에 의하면 예종 9년 3월 계사일에 낙진은 왕사로 임명되었다.5) 그런데 사료 ㉮에 의하면 왕사 책봉을 기념하고 낙진의 덕행을 드러내기 위해 悟空・通慧라는 4자의 법호를 더해주었고 그 이전에 演奧・正觀・圓應・法印이라는 법호가 여러 차례에 걸쳐 주어졌다고 한다. 이는 낙진 비문의 제액에서도 확인이 되는데, 「高麗國大華嚴業第四代王師 歸法法水兩寺住持 悟空通慧僧統 詔謚元景大和尙碑銘〈幷序〉」라고 하여 그의 지위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그 가운데 '悟空通慧僧統'이라고 하여 왕사 책봉 때 받은 법호 悟空・通慧와 僧統이라는 승계를 연칭하여 표시하고 있다. 「樂眞碑」에 의하면 낙진은 총 16자의 법호를 받았는데, 비문의 제액에는 왕사 책봉 때 받은 4자만을 기록하였다.

㉯ 太康 5년 가을에 임금이 有司에게 명하여 內殿에서 法席을 크게 베풀었다. 스님에게 說主가 되어 줄 것을 청하니 송나라의 回使가 바다를 무사히 건너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普利 2자를 주었고 이후 여러 차례 16자를 더하여 法号를 삼은 것은 모두 그 德行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이 해에 왕명으로 全州 金山寺에 주석하였다.6)

---

4) 「樂眞碑」, 『韓國金石文大系』 卷4—慶尙南道・濟州道編, 圓光大學校 出版局, 1985. "甲午歲, 季春 駕幸奉恩寺, 拜■■■■■■■, 上欲有是命, 以師懇讓. 而■■■■■■■

㉰는 문종 33년(1079년)에 송나라 사신의 안전한 귀국을 위한 法席을 韶顯이 說主로서 개최한 후 그 공로에 대한 보상으로 普利라는 법호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그 후 16자의 법호를 더 받았다고 하는데, 이는 그의 제액에서 찾을 수 있다. 「高麗國全州大瑜伽業金山寺 普利了眞精進饒益融慧廣祐護世能化中觀贈諡慧德王師眞應之塔碑銘〈幷序〉」에서 普利부터 中觀까지가 총 18자로 普利와 함께 그 이후 하사되었다는 16자의 법호가 모두 기록되어 있다.

사료 ㉮에 의하면 낙진이 하사받은 총 16자의 법호가 「樂眞碑」 내용에 서술되기는 했지만 그 제액에는 왕사 책봉 때 받은 4자만을 기록되었다. 반면에 ㉰의 韶顯 비문에서는 普利만을 언급한 후 그 외에 16자의 법호가 있다고 서술하고 그 제액에 총 18자의 법호를 모두 기록하였다. 낙진과 소현은 비문과 그 제액을 통해 그들이 받은 법호의 대략을 확인할 수 있지만, 법호 모두를 해당 승려의 전기에 기록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던 듯하다. 대각국사 의천은 왕자 출신이라는 신분의 특수성과 함께 화엄종의 영수이자 천태종 개창자일 뿐만 아니라 『新編諸宗教藏總錄』을 만들고 교장을 간행하여 국제적으로 많이 알려진 인물이었던 만큼 다수의 전기가 존재한다. 의천 전기로는 『高麗史』 宗室傳과 묘지명, 영통사와 선봉사에 세워진 비문 등이 전하고 있는데 이들 자료에는 의천의 법호가 모두 기록되지 않았다. 영통사와 선봉사에 세워진 의천의 비문에는 祐世라는 법호만을 기록하고 있고 묘지명에만 文宗 때 하사받은 '廣智・開宗・弘眞・祐世'를 기록하고 順宗과 宣宗 때도 여러 차례 법호를 더해 받았다고 서술하였다.[7] 그런데 전기 자료가 아닌 다른 기록에 의하면 의천의 법호는 '等論・等觀・普應・圓明・福國・慈濟・廣智・開宗・弘眞・祐世'[8]라고 하여 12자

---

7) 金龍善 編, 「(僧)王釋煦墓誌銘」, 『高麗墓誌銘集成』,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2012. "故文考, 褒爲廣智開宗弘眞祐世僧統. 順宗宣宗, 恩礼甚厚, 累加法号."

8) 『高麗續藏雕造攷・新編諸宗教藏總錄』, 한국학자료원, 1985, 105-106면. 해당 자료는 교장의 간기로 기록된 내용의 일부로 상세한 내용은 '興王寺住持傳賢首教觀兼講天台教觀南山律鈔因明等論等觀普應圓明福國慈濟廣智開宗弘眞祐世僧統 臣 義天 編定'이다. 흥왕사 주지라는 지위와 '傳賢首教觀兼講天台教觀南山律鈔因明'의 전공을 기록한 후 '等論等觀普應圓明福國慈濟廣智開宗弘眞祐世僧統'이라고 하여 법호와 승계를 이어 서술하였다. 여기서 '等論等觀'을 법호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僧)柳昶雲墓誌銘」이다. 해당 묘지명의 제액은 '弘護寺住持等觀僧統墓誌銘幷序'로 홍호사 주지라는 지위와 함께 등관승통이라고 昶雲을 지칭하고 있는데 승통이라는 승계 앞에 쓰여진 等觀이 법호로 이해된다. 그렇

가 추가되어 총 20자가 확인되고 있다. 문종 때 받은 8자의 법호에 더하여 순종・선종 때 더해 받은 것이 12자에 해당할 것이다. 의천과 같이 다양한 전기 자료가 남겨진 경우에도 법호가 모두 기록되지 않았던 상황을 보면 현재 남겨진 고려시대 승려에 대한 자료인 고승비와 묘지명에는 그들이 하사받은 법호가 다수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고려 전기의 법호에 대한 고찰은 현재 남겨진 기록이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을 참작해야할 것이다.

단편적인 자료에서나마 소현은 18자의 법호, 의천은 20자, 낙진은 16자를 하사받았음이 확인되었다. 중국의 師號에 연결된 법호는 2자에서 8자 등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9] 이에 비해서 고려 승려들의 법호 글자 수가 많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으로 거론할 수 있다. 이러한 법호는 사료 ㉮와 ㉯에서 동일하게 언급한 바와 같이 해당 승려의 德行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었다.

> ㉯ 開泰 2년 가을에 (…) 임금이 친히 나아가 왕사로 책봉하였다. (…) 3년 후에 또 普化라고 號를 더하니, 모두 큰 덕을 가진 자만이 반드시 그 이름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10]

사료 ㉯는 智宗이 개태 2년인 현종 4년(1013년)에 왕사에 책봉된 지 3년 후에 普化라는 법호를 더해 받은 사실과 이러한 법호는 승려로서 큰 덕[大德]을 지닌 자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서술하였다. 왕사로 책봉된 고승에게 주어진 법호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大德'을 가진 자만이 그에 합당한 이름을 가질 수 있다고 하여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단순하게는 普化란 '널리 교화한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이지만, 해당 승려의 업적을 표현한 것이므로 대덕을 가진 자만이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과시한 것이라 이해된다. 사료

---

다면 의천의 '等論等觀'도 법호의 하나로 볼 수 있다.

9) 『大宋僧史略』 卷下 四十三賜師號, 大正新脩大藏經 권54, 249中면; 謝重光・白文固, 「宋代的僧官制度」, 『中國僧官制度史』, 青海人民出版社, 1990, 163-164面; 郭學勤, 「論北宋佛道二教管理制度」, 『盐城师范学院学报』(人文社会科学版) 2013年 1期(第33卷 139號), 盐城师范学院, 2013; 王德朋, 「金代僧尼名號探析」, 『學習與探索』, 2014年 7期(第228期), 黑龙江省社会科学院, 2014.

10) 「智宗碑」, 『韓國金石文大系』 卷7—江原道編, 圓光大學校 出版局, 1998. "開泰二年秋, (…) 上親詣拜爲王師. (…) 越三年, 又加號曰普化, 皆所謂有大德者, 必得其名矣."

㉮·㉯·㉰의 표현을 참고하면 법호는 해당 승려의 덕행을 인정하고 드러내기 위하여 명명되고 하사된 것이다.

한편 사료 ㉰에서 普化라는 법호가 다시 추가된 것이라고 하여 智宗이 그 이전에 법호를 받았음을 짐작하게 한다. ㉰보다 앞선 비문의 서술에서 成宗 때 慧月이라는 법호를 받고, 穆宗 대에는 여러 차례에 거쳐 光天·遍炤·至覺·智滿·圓默이라는 법호를 받으면서 최종적으로 禪師로 임명되었다고 하며 현종이 즉위한 후에는 대선사로 승격하면서 寂然이라는 法稱을 받았다고 한다.[11] 여기서 법호를 號라고 약칭하는가 하면, 法稱이라고 표현하였다. 「海麟碑」에서도 제액에 법호로 기록된 '講眞·弘道·明了·頓悟·戒正·高妙·應覺·探玄·道源·通濟·淵奧·法棟·具行·了性·導首·融炤·朗徹' 중 探玄·道源과 融炤, 朗徹를 비문 내용 중에서 '加法稱'하거나 '進法稱'했다고 표현하고 있어[12] 법호를 法稱이라고 명칭하기도 했음이 확인된다.

또한 寂然國師 英俊에게 '載錫懿號'[13]했다거나 慧炤國師 鼎賢에게 '親加懿號'[14]했다는 표현이 있어 법호를 懿號라고 지칭했음도 알 수 있다. 懿號는 선대 국왕이나 왕비 혹은 산천의 神祇에게 이름을 올릴 때도 사용되고 있는 점을 참고한다면 법호를 懿號라고도 표기한 것은 법호 자체가 美稱이었음을 드러낸 것이다.

이러한 법호가 고려시대에 가장 먼저 확인되는 것은 太祖 21년의 일이다.[15]

> ㉱ [태조] 21년 봄 3월에 西天竺의 승려인 弘梵大師 喔哩嚩日羅가 왔다. 본래 摩竭陁國의 大法輪菩提寺의 沙門이었다. 임금이 兩街에게 威儀있는 法駕를 크게 준비하게 하여 맞이하였다.[16]

---

11) 「智宗碑」, 『韓國金石文大系』 卷7—江原道編, 圓光大學校 出版局, 1998.
12) 「海麟碑」, 『韓國金石文大系』 卷7—江原道編, 圓光大學校 出版局, 1998.
13) 「英俊碑」, 『韓國金石全文』 中世上.
14) 「鼎賢碑」, 『韓國金石文大系』 卷5—京畿道編, 圓光大學校 出版局, 1988.
15) 신라시대에 이미 법호는 사용되기도 했다. 「無染碑」에 의하면, 그는 廣宗이라는 法稱을 받았다[加法稱曰廣宗]. 또한 「大通碑」에서 무염은 廣宗大師라고도 지칭되었다.
16) 『高麗史』 卷2 世家2 太祖 21年 春三月.

여기서 喹哩嚩日羅는 법명이거나 그의 이름이고 홍범대사가 法號와 師號가 함께 합쳐져 표현된 것이다. 摩竭陁國 大法輪菩提寺 출신이라고 한 만큼 弘梵이라는 법호는 그가 인도 불교 혹은 산스크리트어로 이루어진 불법의 내용을 전달하는 일을 한다는 의미에서 주어진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홍범이라는 법호는 그가 이미 중국에서 받아온 것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홍법대사의 고려 방문을 통해 師號와 함께 法號가 수여되는 것에 대해 고려가 다시 한번 인지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미 師號와 함께 2자의 법호를 하사하는 제도가 당나라 이후에 정착되었으므로[17] 고려도 이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광종 대까지 세워진 선종 승려의 비문의 내용을 보면 아직 고려의 승계가 정비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고승 사후에 시호와 함께 '大師'의 호칭이 하사되었으며[18] 심지어 생전의 고승에게 대사와 법호를 하사한 사례가 있다. 璨幽의 경우 광종 즉위 이후 어느 시기엔가 국사로 책봉받고 광종 9년(958년) 8월에 입적했는데, 국사 책봉 이전에 '師號를 바쳐 證眞大師로 삼았다'[19]고 한다. 또 坦文은 광종 19년에 왕사로 임명되면서 '弘道三重大師'가 되었다.[20] 당시 최고의 승계가 삼중대사였으므로[21] 弘道라는 법호와 삼중대사라는 승계를 받고 왕사라는 승직에 임명된 것이다. 이를 통해 왕사·국사의 승직과 승계가 정비되는 고려 초부터 법호가 하사되었음이 확인된다.

태조 대부터 중국과의 관계나 승려의 교류를 통해 법호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며, 승계 제도가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이미 법호가 사여되고 있었다. 고려 전기에 확인되는 법호의 사례는 아래의 표와 같다.[22]

---

17) 『大宋僧史略』 卷下 四十三賜師號, 大正新脩大藏經 권54, 249中면.
18) 朴胤珍, 앞의 글, 2016, 161면.
19) 「璨幽碑」, 『韓國金石文大系』 卷5—京畿道編, 圓光大學校 出版局, 1988. "遂奉師號, 爲證眞大師."
20) 「坦文碑」, 『增補 韓國金石文大系』 卷2—忠淸南北道編, 圓光大學校 出版局, 2000. "是歲, 冬十月, 大王, (…) 迺使太相金遵巖等, 奉徽號, 爲王師弘道三重大師."
21) 許興植, 「高麗의 佛教制度와 그 機能」, 『高麗佛教史研究』, 일조각, 1986.
22) 무신란을 기점으로 고려시대는 전기와 후기로 구분된다. 고려 전기 법호의 사례는 무신란 이전에 하사받은 것이 분명한 것만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그 시기가 애매한 경우는 후기에서 다루고자 한다. 예를 들자면, 靈炤(「(僧)金靈炤墓誌銘」)는 예종 10년(1115년)에 출생해서 인종 3년(1125)에 출가했고 명종 18년(1188년)에 입적하였다. 영소의 법호로 正覺·證智가 확인되는데, 그 하사 시기를 알

〈표 1〉 고려 전기 법호의 사례

| 번호 | 법명 | 법호 | 원문 | 전거 | 비고 |
|---|---|---|---|---|---|
| 1 | (元宗大師) 璨幽 | 證眞 | 遂奉師號 爲證眞大師 | 「璨幽碑」 | |
| 2 | (大師) 玄坦 | 明眞・弘曉 | 謹案金堂記 初無金堂 有寺主明眞弘曉大師玄坦 於宋淳化二年我成宗十年辛卯二月 始創之 | 李懶, 「龍頭山金藏寺金堂主彌勒三尊改金記」, 『東文選』 卷68 記. | 淳化 2년은 성종 10년. |
| 3 | (惠居國師) 智■ | 辯智・無碍, 圓明・妙覺, 興福・佑世 | 賜辯智無碍之號 (…) 賜圓明妙覺之號 (…) 又賜興福佑世之徽號 | 「智■碑」 | |
| 4 | (法印國師) 坦文 | ①弘道 | 奉徽號 爲王師弘道三重大師 | 「坦文碑」 | |
| 5 | (大師) 昶秀 | 嵩敎・定性 | 維統和二十三年歲次乙巳五月二十日 東邊塔低落 治建時 寺主嵩敎定性大師昶秀和尙 時造一千仏祖堂五間 千仏堂九間 | 「東臺塔誌石」; 黃壽永, 『黃壽永全集』 4—금석유문, 혜안, 1999, 218면. | 統和 23년은 목종 8년. |
| 6 | (大師) 曇昱 | ②了眞・炤世 | 初校華嚴業了眞炤世大師 曇昱 | 일본 京都國立博物館 소장 『大寶積經』 제32권 발원문; 권희경, 『고려의 사경』, 글고운, 2006, 46면. | 목종 9년에 작성. |
| 7 | (大師) 弘哲 | 眞念・③廣濟 | 高麗國摠持寺主眞念廣濟大師釋弘哲 敬造寶篋印經板 印施普安佛塔中 供養時 統和二十五年丁未歲記 | 南權熙, 『高麗時代 記錄文化 硏究』, 淸州古印刷博物館, 2002, 5면 사진. | 統和 25년은 목종 10년. |
| 8 | 弘法國師 | 圓光・④遍炤 | 大宋高麗國中原府開天山淨土寺圓光遍炤弘法大禪師(제액) | 「弘法國師碑」 | 결락이 심해서 법명을 알 수 없음. 弘法은 시호. |
| 9 | (圓空國師) 智宗 | 慧月, 光天・④遍炤・至覺・智滿・圓默, 寂然, 普化 | 号爲慧月 (…) 累加光天遍炤至覺智滿圓默禪師 (…) 進法稱日寂然 (…) 又加號日普化 皆所謂有大德者 必得其名矣 | 「智宗碑」 | |
| 10 | (兩街都僧統・大師) 逈兢 | 通眞・光敎・圓濟・①弘道 | 左右兩街都僧統通眞光敎圓濟弘道大師臣逈兢 | 「奉先弘慶寺碣記」, 『朝鮮金石總覽』 권상, 260면. | 현종 17년(1026)에 작성. |
| 11 | (大師) 得聰 | 廣利・證玄 | 廣利證玄大師賜紫沙門臣得聰 | 「奉先弘慶寺碣記」, 『朝鮮金石總覽』 권상, 261면. | |
| 12 | (大德) 藏琳 | 靜慮・修眞・悟理 | 靜慮修眞悟理大德賜紫沙門臣藏琳 | 「奉先弘慶寺碣記」, 『朝鮮金石總覽』 권상, 261면. | |

수 없다. 이런 경우는 고려 전기 법호의 사례 검토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표 1〉에 넣지 않았다. 한편 『三國遺事』 권3 塔像4 前後所將舍利의 普耀禪師 사례도 〈표 1〉에 언급하지 않았다. '賜御普耀'되었다는 표현에서 보요가 법호일 가능성도 있지만, 시호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 번호 | 법명 | 법호 | 원문 | 전거 | 비고 |
|---|---|---|---|---|---|
| 13 | (三重大師) 彦崇 | 圓慧・智廣・普觀・善辯・⑤通濟・得理 | 權知寺主圓慧智廣普觀善辯通濟得理三重大師賜紫沙門臣彦崇 | 「奉先弘慶寺碣記」,『朝鮮金石總覽』 권상, 262면. | |
| 14 | (大師) 朗崇 | 解行・無垢 | 都監解行無垢大師賜紫沙門臣朗崇 | 「奉先弘慶寺碣記」,『朝鮮金石總覽』 권상, 262면. | |
| 15 | (慧炤國師) 鼎賢 | ■利・朗哲・破有・通化・無著・靈敏・⑥淵奧・⑦具行・定覺・道首 | [결락] 利朗哲破有通化無著靈敏淵奧具行定覺道首都僧統贈諡慧炤國師碑銘幷序(제액) | 「鼎賢碑」 | |
| 16 | (智光國師) 海麟 | 講眞・①弘道, 明了・頓悟, 戒正・高妙・應覺, 探玄・道源, ⑤通濟・⑥淵奧・法棟, ⑦具行・⑧了性・導首, 融炤, 朗徹 | 受法号曰講眞弘道 (…) 号爲明了頓悟 (…) 加重大師 戒正高妙應覺爲号 (…) 特授三重大師 (…) 加法稱曰探玄道源 (…) 加號曰通濟淵奧法棟 (…) 荐加具行了性導首爲号 (…) 法稱曰融炤 (…) 累進法稱曰朗徹 | 「海麟碑」 | |
| 17 | (慧德王師) 韶顯 | 普利, ②了眞・精進・饒益・融慧・廣祐・護世・能化・中觀 | 高麗國全州大瑜伽業金山寺 普利了眞精進饒益融慧廣祐護世能化中觀贈諡慧德王師眞應之塔碑銘〈幷序〉(제액) | 「韶顯碑」 | |
| 18 | (大師) 秀立 | 得奧・微定 | 又咸雍元年十一月 當院住持得奧微定大師釋秀立 定院中常規十條 | 『三國遺事』 卷3 塔像4 伯嚴寺石塔舍利 | 咸雍 元年은 문종 19년. |
| 19 | (等觀僧統) 昶雲 | ⑨等觀 | 弘護寺住持等觀僧統墓誌銘幷序(제액) | 「(僧)柳昶雲墓誌銘」 | |
| 20 | (大覺國師) 義天 | 等論・⑨等觀・⑩普應・圓明・福國・慈濟, ⑪廣智・開宗・⑫弘眞, 祐世 | 故文考 褒爲廣智開宗弘眞祐世僧統順宗宣宗 恩礼甚厚 累加法号 | 「(僧)王釋煦墓誌銘」 | |
| | | | 丁未七月乙酉 敎書 褒爲祐世僧統 | 「靈通寺義天碑」 | |
| | | | 文祖二十三年 賜號祐世 授職爲僧統 | 「僊鳳寺義天碑」 | |
| | | | 興王寺住持傳賢首敎觀兼講天台敎觀南山律鈔因明等論等觀普應圓明福國慈濟廣智開宗弘眞祐世僧統 臣義天 編定 | 『高麗續藏雕造攷・新編諸宗敎藏總錄』, 한국학자료원, 1985, 127면. | |
| 21 | (僧統) 釋竀(規) | 導生(道生) | 延德宮第六王子 投師門而出家 卽今俗離山法住寺住持導生僧統 是也 | 「韶顯碑」;『高麗史』 卷90 列傳3 宗室1 | |
| | | ⑩普應 | 后生順宗・宣宗・肅宗・大覺國師煦・常安公琇・普應僧統規・金官侯비・卞韓侯愔・樂浪侯忱・聰慧首座璟・積慶・保寧二宮主 | 『高麗史』 卷88 列傳1 后妃1 仁睿順德太后李氏 | |
| 22 | (首座) 璟 | 聰慧 | 后生順宗・宣宗・肅宗・大覺國師煦・常安公琇・普應僧統規・金官侯비・卞韓侯愔・樂浪侯忱・聰慧首座璟・積慶・保寧二宮主 | 『高麗史』 卷88 列傳1 后妃1 仁睿順德太后李氏 | |

| 번호 | 법명 | 법호 | 원문 | 전거 | 비고 |
|---|---|---|---|---|---|
| 23 | (大師) 尙源 | 通奧 | 講華嚴經興王寺通奧大師賜紫沙門臣 尙源 校勘 | 『金剛般若經疏開玄鈔』 刊記; 『高麗續藏雕造攷・新編諸宗敎藏總錄』, 한국학자료원, 1985. | |
| 24 | (大師) 融觀 | ⑬慈應 | 講華嚴經佛日寺慈應大師賜紫沙門臣 融觀 校勘 | 『金剛般若經疏開玄鈔』 刊記; 『高麗續藏雕造攷・新編諸宗敎藏總錄』, 한국학자료원, 1985. | |
| 25 | (大師) 滋顯 | 慧炤 | 講華嚴經佛日寺慧炤大師賜紫沙門臣 滋顯 校勘 | 『金剛般若經疏開玄鈔』 刊記; 『高麗續藏雕造攷・新編諸宗敎藏總錄』, 한국학자료원, 1985. | |
| 26 | (首座) 理琦 | 圓覺・⑭景哲・⑮演奧・⑬慈應・⑯利生・⑰弘濟 | 興敎寺住持傳賢首敎觀圓覺景哲演奧慈應利生弘濟首座賜紫 臣 理琦 重校 | 『高麗續藏雕造攷・新編諸宗敎藏總錄』, 한국학자료원, 1985, 127면. | |
| 27 | (首座) 處淵 | ⑱性圓・⑭景哲・⑮演奧・⑬慈應・⑯利生・⑰弘濟 | 佛日寺住持傳賢首敎觀性圓景哲演奧慈應利生弘濟首座賜紫 臣 處淵 重校 | 『高麗續藏雕造攷・新編諸宗敎藏總錄』, 한국학자료원, 1985, 127면. | |
| 28 | (元景王師) 樂眞 | ⑬慈應・⑲究理, ⑮演奧, ⑳正觀, 圓應, ㉑法印, ㉒悟空・通慧 | 甲午歲季春 駕幸奉恩寺 拜[결락] 上欲有是命 以師懇讓 而[결락] 又加法號曰 悟空通慧 師之法號 初受慈應究理 自後累加曰演奧 曰正觀 曰圓應 曰法印 今又加四字 皆所以旌德行也 | 「樂眞碑」 | |
| 29 | (三重大師) 省聰 | ㉓明悟 | 戊申 以宋僧省聰惠珍 各爲明悟三重大師 | 『高麗史』 卷11 世家 11 肅宗 元年 9月 戊申 | 송나라 승려에 대한 법호 하사. |
| 30 | (三重大師) 惠珍 | ㉓明悟 | 戊申 以宋僧省聰惠珍 各爲明悟三重大師 | 『高麗史』 卷11 世家 11 肅宗 元年 9月 戊申 | 송나라 승려에 대한 법호 하사. |
| 31 | (圓明國師) 澄儼 | 福世 | (乾統) 五年乙酉 詔除僧統 賜号福世 | 「(僧)王澄儼墓誌銘」 | 乾統 5년은 숙종 10년. |
| 32 | (惠照國師) 曇眞 | 廣潤 | 其國法師所度弟子曰廣潤大師曇眞 / 勾當廣潤大師曇眞 | 浙江大學韓國硏究所 編著, 「宋杭州南山慧因敎院晋水法師碑」, 『十至十四世紀中韓關係史料彙編』, 學苑出版社, 1999; 「敕賜杭州慧因敎院記」, 같은책. | |
| 33 | (國師) 德緣 | ⑲究理・智炤・淨光・處中・吼石・㉑法印 | 海東高麗國義龍山弘化寺住持 究理 智炤淨光處中吼石法印僧統 賜紫沙門 德緣 勘校 | 『弘贊法華傳』, 跋; 『卍續藏經』 第149 中國撰述 史傳部, 73上면. | |

| 번호 | 법명 | 법호 | 원문 | 전거 | 비고 |
|---|---|---|---|---|---|
| 34 | (三重大師) 僧麟 | 妙悟 | 門人 天壽寺義學 月南寺住持 妙悟三重大師 臣 僧麟 奉宣書幷篆額 | 「僊鳳寺義天碑」 | |
| 35 | (重大師) 之惠 | 討源・⑧了性 | 次日之惠 與佛氏 號討源了性重大師 今住天冠 | 「李公壽墓誌銘」 | |
| 36 | (首座) 玄應 | ㉔見性・㉕寂炤 | 高麗洛都歸法寺住持見性寂炤首座玄應者 立都第十五王肅宗之子也 | 「(僧)王玄應墓誌銘」 | 숙종의 소군. |
| 37 | (僧統) 聰諝 | ③廣濟 | 高麗國洪圓寺第七代住持 廣濟僧統諱聰諝 | 「(僧)朴聰諝墓誌銘」 | |
| 38 | (大禪師) 敎雄 | 了說・演妙・⑫弘眞・慧鑑・妙應 | 卒國淸寺住持了說演妙弘眞慧鑑妙應大禪師墓誌銘(제액) | 「(僧)朴敎雄墓誌銘」 | |
| 39 | (三重大師) 世賢 | 妙能 | 維皇統三年癸亥歲五月朔丁巳七日癸亥 高麗國興王寺接松川寺住持妙能三重大師世賢歿 | 「(僧)世賢墓誌銘」 | 皇統 3년은 인종 20년. |
| 40 | (僧統) 德謙 | 解空・㉔見性・㉕寂炤・玄覽・㉖通炤・㉗圓證 | 高麗國瑜伽業玄化寺住持解空見性寂炤玄覽通炤圓證僧統墓誌(제액) | 「(僧)金德謙墓誌銘」 | |
| 41 | (僧統) 敎雄 | ㉒悟空・盡性⑱性圓・㉗圓證・㉘正覺・出纏・⑧了性・㉔見性・㉖通炤・⑳正觀・㉕寂炤・㉑法印・超悟 | 洪圓寺住持悟空盡性性圓圓證正覺出纏了性見性通炤正觀寂炤法印超悟僧統 諱敎雄 | 「(僧)康敎雄墓誌銘」 | |
| 42 | (元敬國師) 冲曦 | 極世 | 次日應樞 投皇子極世僧統 | 「李軾墓誌銘」 | |
| | | 拯世 | 以弟興王寺法尊玄曦 爲拯世僧統 | 『高麗史』卷17 世家 17 毅宗 2年 11月 | 玄曦는 冲曦의 옛 이름. |
| 43 | (僧統) 義光 | ㉖通炤・㉘正覺 | 卒瑜伽業弘圓崇敎寺住持通炤正覺首座墓銘(제액) | 「(僧)金義光墓誌銘」 | 제액은 首座이지만, 승통으로 추증. |
| 44 | (首座) 觀奧 | ⑬慈應・了■・定慧・㉖通炤・㉗圓證・神解・證智 | 修理寺住持慈應了■定慧通炤圓證神解證智首座墓誌銘幷序(제액) | 「(僧)崔觀奧墓誌銘」 | |
| 45 | (禪師) 曇曜 | 虛靜 | 年十七 入京師 始就學 鞠于継母李氏之家 與異母■虛靜禪師曇曜 友愛篤至 (…) | 「李文鐸墓誌銘」 | 이문탁이 17세인 해는 인종 5년. |
| 46 | (大禪師) 之印 | ⑪廣智 | 及今上卽祚之二年丁卯 別降批墨加大禪師 己巳年 上以御札親灑 法号廣知 | 「(僧)王之印墓誌銘」 | 예종의 소군. 정묘년은 의종 원년, 기사년은 의종 2년. |

* 법명 앞에 확인할 수 있는 최고 지위를 괄호 안에 넣어 표시하였다.
* 법호 하사 시기가 정확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승려의 활동 시기를 감안하여 표를 작성하였다.
* 무신정권기의 묘지명에 기록되어 고려 전기에 하사된 법호인지 무신정권기의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는 인용하지 않았다.

위의 〈표 1〉을 통해 대략적으로 고려 전기에 사여된 법호의 사례가 확인된다. 승계로 본다면 가장 하위인 大德인 藏琳부터 법호를 받았고, 승직으로 본다면 왕사와 국사와 같은 고승도 법호를 보유하고 있었다. 기본적으로는 2자의 법호를 가졌으나 최대로는 海麟이 34자의 법호를 보유했다. 법호는 懿號나 法稱이라고도 지칭되었으며, 사료 ㉮·㉯·㉰의 언급처럼 해당 승려의 德行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지어지고 수여되었다. 〈표 1〉에 언급된 법호를 살펴보면 해당 승려의 불교적 깨달음을 드러낼 수 있는 용어로 구성되어 그들의 德行 즉 종교적 권위를 높이는 단어로 하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동일한 기록인 「奉先弘慶寺碣記」[23]에서 대덕인 〈표 1〉 12번 大德 藏琳이 靜慮·修眞·悟理라는 6자 법호를 가진 데 반해 그보다 상위 승계인 大師를 받은 11번 得聰이 廣利·證玄의 4자 법호를 보유한 것이 주목된다. 상위의 승계라고 해서 그 하위보다 더 많은 법호를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준다. 승계가 높아진다고 법호를 하사하는 것이 아니라 '德行'이라고 하는 공로가 있어야 법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奉先弘慶寺碣記」라는 하나의 기록 안에 기록된 만큼 동일한 원칙에 의해 직함과 칭호가 표기되었을 텐데 하위 승계 대덕 藏琳이 가지고 있었던 법호의 수가 대사 得聰보다 많다는 것은 기록 당시 藏琳의 법호가 得聰보다 많았기 때문이다. 이는 승계의 등급에 따라 법호가 일괄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승려에 따라 수여받은 법호가 달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승계를 가진 모든 승려가 법호를 가지지는 않았다. 6번 曇昱이 첫 교감자[初校]로 기록된 발원문에 함께 서술된 승려는 '重校 華嚴業大師 緣密'로, 大師라는 승계를 가졌으나 법호가 없다. 동일한 자료에 법호를 표현한 승려와 그렇지 않은 승려가 있다는 것은 후자에게 법호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해된다. 역시 같은 자료에 언급된 인물들인 만큼 같은 기준에 근거해서 그들의 지위와 호칭이 기록되었을 텐데 법호를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있다는 것은 승계를 가진 승려에게 당연하게 법호를 준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23) 「奉先弘慶寺碣記」, 『朝鮮金石總覽』 권상, 260면.

이유나 공로가 있어야만 수여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상과 같은 법호는 승계와 또 다른 방면으로 이를 소유한 승려의 명예를 높여주는 역할을 했다고 이해된다. 사료 ㉮·㉰의 서술처럼 법호로 승려의 덕행을 드러내고 ㉱의 언급처럼 큰 덕[大德]을 가진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이름이라고 표현한 것에서 확인된다. 법호는 승계와 다른 방식으로 국가가 승려에게 부여하는 명예적 지위였고, 국가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관할하는 승려를 인정·포상하는 방법이었던 것이다.

## 3. 고려 전기 法號 운영의 특징

〈표 1〉 11번 得聰과 12번 藏琳의 사례를 통해 법호는 승계의 승진과 연계되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호를 하사받을 공로가 있을 때 사여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앞서 사료 ㉰에서 소현이 송나라 사신의 귀국을 위한 법석의 說主로서 활약한 후 普利라는 법호를 받은 사례에서 그것이 분명히 드러나며, ㉮·㉰에서 해당 승려의 德行을 널리 알리기 위해 하사했다거나 ㉱에서 大德을 가진 자만이 받을 수 있다는 표현도 그 승려가 일정한 공로가 있음을 알려준다. 그런데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법호를 보유한 경우가 존재한다.

㉱-1) [결락]利·朗哲·破有·通化·無著·靈敏·淵奧·具行·定覺·道首都僧統贈諡慧炤國師碑銘幷序[24]

㉱-2) 統和年中 受法号曰講眞弘道 (…) 太中祥符十■■■ 号爲明了頓悟 (…) 太平年中 加重大師 戒正高妙應覺爲号 (…) 特授三重大師 (…) 迄于慝宗臨朝 轉甚重之 特授三重大師 幷賜磨衲法服一領 加法稱曰探玄道源 (…) 重熙季中 加號曰通濟淵奧法棟 (…) 荐加具行了性導首爲号 (…) [淸寧]三季 法稱曰融炤 (…) 五季陽月八日 師赴內殿 爲百座會 第一說主 才宣半偈 荐集丕休 累進法稱曰朗徹[25]

㉲-1) 興教寺住持傳賢首教觀圓覺景哲演奧慈應利生弘濟首座賜紫 臣 理琦 重校

㉲-2) 佛日寺住持傳賢首教觀性圓景哲演奧慈應利生弘濟首座賜紫 臣 處淵 重校[26]

---

24) 「鼎賢碑」, 『韓國金石文大系』 卷5—京畿道編, 圓光大學校 出版局, 1988.
25) 「海麟碑」, 『韓國金石文大系』 卷7—江原道編, 圓光大學校 出版局, 1998.
26) 『高麗續藏雕造攷』, 高麗續藏雕造攷·新編諸宗教藏總錄, 한국학자료원, 1985, 127면.

㈏-1)은 「鼎賢碑」의 제액 부분이다. 비문에 의하면, 정현은 광종 23년(972년)에 태어나 경종 5년(980년)에 출가하였다. 성종 15년(996년) 승과에 합격하고 목종 2년(999년)에 大師로 승격하였으며 문종 3년(1049년)에 왕사로 임명되었다가 문종 8년(1054년)에 국사로 책봉된 후 곧 입적하였다. 그는 문종 즉위년(1046년)에 『金鼓經』을 강한 후 가사를 하사받고, 문종 2년에는 文德殿에서 기우를 위해 8권 『金經』을 강하여 효험이 있기도 하였다. ㈏-1)에 기록된 정현의 법호는 『金鼓經』과 『金經』을 강론한 법회에 대한 공로로 주어진 것일 수도 있다.

그런데 ㈏-1)에 기록된 鼎賢의 법호가 ㈏-2) 해린의 淵奧・具行과 일치한다. 또한 정현 법호의 朗哲・道首와 해린의 朗徹・導首는 유사하기까지 하다. 道首(導首)와 朗哲(朗徹)을 포함하면 8자, 이를 제외한다고 해도 4자의 법호가 일치한다. 해린은 성종 3년(984년)에 태어나 목종 2년에 구족계를 받았으며 목종 7년(1004년) 승과에 합격하였다. 그는 문종 10년에 왕사가 되었다가 문종 12년에 국사로 임명된 후 동왕 24년에 입적하였다. 정현과 해린의 승려로서의 활동 시기가 꽤 겹치고 있다.

정현의 법호 수여 시기를 전혀 알 수 없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2)에서 해린의 법호 하사 시기는 대략적으로 파악된다. 정현과 일치하는 법호 중심으로 살펴보면 淵奧를 하사받은 중희 연간은 덕종 원년(1032년)부터 문종 8년(1054년) 동안으로 정현은 그 당시 궁궐에 들어가 『법화경』을 강하여 기우하기도 하였다. 또한 뒤 기사에서 중희 14년이라는 기록이 있으므로 淵奧의 수여는 덕종 원년부터 정종 11년 사이의 일이다. 한편 具行・導首의 법호를 받은 해는 정종 11년(1045년)으로 정현은 그 해에 왕의 부름을 받고 궁궐에서 唯心妙義를 강론한 적이 있다. 朗徹을 하사받은 문종 13년(1059년)에 정현은 역시 내전에 나아가 百座會의 제1 說主로서 활동한 바 있다. 이상과 같이 정현은 법호를 하사받은 시기를 대략 파악할 수 있고 그 시기에 국왕을 위한 법회에서 활동한 바가 있음을 확인되므로 이상의 법호가 그를 표창하기 위해 주어진 것일 수도 있다. 해린의 법호 하사 시기는 대략적으로 파악되지만, 정현은 그 시기를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현과 해린이 비슷한

시기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호를 하사받은 것은 분명하다.

㉮-1)과 ㉮-2)는 『圓宗文類』의 교감자 목록 중 일부이다. ㉮-1)의 理琦와 ㉮-2)의 處淵은 重校 담당자로서 그들의 직함이 나열되어 있다. 하나의 전거에 기록된 理琦와 處淵의 법호 중 景哲・演奧・慈應・利生・弘濟 총 10자가 동일하다. 이는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법호를 가진 다수의 승려가 존재했다는 분명한 증거이며, 사료 ㉰에서 확인한 정현과 해린의 중복되는 법호도 동시에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높여준다. 한편 『圓宗文類』는 의천이 編定한 것으로 의천의 주된 활동 시기에 만들어졌는데, 이때 활동한 樂眞(〈표 1〉 28번)의 법호도 ㉮와 겹치는 것이 있다. 즉 사료 ㉮에서 언급된 낙진의 법호 중 慈應과 演奧는 ㉮의 理琦・處淵이 보유한 법호이다. 그뿐만 아니라 낙진과 비슷한 시기에 생존한 화엄종 출신의 敎雄(〈표 1〉 41번)과는 悟空・正觀・法印 6자의 법호가 일치한다. ㉮-1)理琦와 ㉮-2)處淵은 의천의 『圓宗文類』 편찬에 참여한 인물이고, 樂眞과 敎雄은 모두 화엄종 소속 승려라는 공통점마저 가지고 있다. 화엄종 소속 승려로 의천의 직제자이거나 손제자였던 理琦・處淵・樂眞・敎雄 등이 중복된 법호를 가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표 1〉 24번의 融觀 또한 의천이 주도한 교장의 교감자로서 사료 ㉮의 理琦・處淵, 樂眞(〈표 1〉 28번)과 동일한 慈應이라는 법호를 보유하고 있었다. 慈應은 동시에 혹은 비슷한 시기에 화엄종 소속 4명의 승려가 법호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표 1〉 44번의 유가종 觀奧도 慈應이라는 법호를 가지기도 하였다. 사료 ㉰의 정현과 해린은 유가종 승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동일한 4자의 법호와 유사한 4자를 보유하고 있었다.

동일한 법호를 2명 이상의 승려에게 하사하는 내용은 『高麗史』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표 1〉의 29・30번이다. 숙종 원년에 송나라에서 온 승려인 성총과 혜진에게 삼중대사라는 승계와 明悟라는 법호를 동시에 주고 있다. 사료에서 '各'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성총・혜진 2명 모두에게 明悟라는 동일한 법호를 하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당시 고려 승려에게 동일한 법호가 하사되고 있었던 상황과 연계된다.

그 외에도 〈표 1〉에 ①-㉘로 중복된 법호를 표시하였다. 고려 전기에 중복된 법호를 사용한 사례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2〉 고려 전기 법호의 중복 사용 사례[27]

| 번호 | 중복 법호 | 법호 보유 승려 | 비고 |
|---|---|---|---|
| 1 | 弘道 | 坦文, 逈兢, 海麟 | |
| 2 | 了眞 | 曇昱, 韶顯 | |
| 3 | 廣濟 | 弘哲, 聰諝 | |
| 4 | 遍炤 | 弘法國師, 智宗 | |
| 5 | 通濟 | 彦崇, 海麟 | |
| 6 | 淵奧 | 鼎賢, 海麟 | ⑮演奧와 유사 |
| 7 | 具行 | 鼎賢, 海麟 | |
| 8 | 了性 | 海麟, 之惠, 敎雄 | 敎雄은 화엄종 소속 |
| 9 | 等觀 | 昶雲, 義天 | |
| 10 | 普應 | 義天, 釋寵 | |
| 11 | 廣智 | 義天, 之印 | |
| 12 | 弘眞 | 義天, 敎雄 | 敎雄은 천태종 소속 |
| 13 | 慈應 | 融觀, 理琦, 處淵, 樂眞, 觀奧 | |
| 14 | 景哲 | 理琦, 處淵 | |
| 15 | 演奧 | 理琦, 處淵, 樂眞 | ⑥淵奧와 유사 |
| 16 | 利生 | 理琦, 處淵 | |
| 17 | 弘濟 | 理琦, 處淵 | |
| 18 | 性圓 | 處淵, 敎雄 | 敎雄은 화엄종 소속 |
| 19 | 究理 | 樂眞, 德緣 | |
| 20 | 正觀 | 樂眞, 敎雄 | 敎雄은 화엄종 소속 |
| 21 | 法印 | 樂眞, 德緣, 敎雄 | 敎雄은 화엄종 소속 |
| 22 | 悟空 | 樂眞, 敎雄 | 敎雄은 화엄종 소속 |
| 23 | 明悟 | 省聰, 惠珍 | |
| 24 | 見性 | 玄應, 德謙, 敎雄 | 敎雄은 화엄종 소속 |
| 25 | 寂炤 | 玄應, 德謙, 敎雄 | 敎雄은 화엄종 소속 |
| 26 | 通炤 | 德謙, 敎雄, 義光, 觀奧 | 敎雄은 화엄종 소속 |
| 27 | 圓證 | 德謙, 敎雄, 觀奧 | 敎雄은 화엄종 소속 |
| 28 | 正覺 | 敎雄, 義光 | 敎雄은 화엄종 소속 |

〈표 2〉는 고려 전기에 다수의 법호가 중복되었음을 대략적으로 보여준다. 최대 5인이 동일한 법호를 보유하였다. 심지어 형제간이었던 대각국사 의천

27) 본문에서 언급한 정현 법호의 朗哲・道首와 유사한 해린의 朗徹・導首는 동일한 법호로 파악하지 않았다. 또한 무신정권기 이후의 법호와 중복된 것도 언급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고종 5년에 사망한 후 장례가 치루어진 「柳英材妻趙氏墓誌銘」에 언급된 '氷山寺堂頭了眞禪師'의 법호는 ②了眞과 중복된다. 또한 의천의 법호인 福國・祐世 등은 원간섭기에 활동한 義旋의 법호와 중복되기도 한다. 이외에도 고려 후기까지 감안하면 더 많은 중복 법호가 있지만, 이에 대한 검토는 이후로 미루고자 한다.

과 도생승통 釋竀의 법호 중 普應이 일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예종의 소군인 之印이 의종으로부터 친필로 받았던 법호인 廣智는 일찍이 그의 종조부인 대각국사 의천이 문종 때 받은 것이었다. 이상을 통해 특정 법호가 한 명의 승려에게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의 법호가 여러 명의 승려에게 주어진 경우도 다수였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사료 ㉮·㉯와 樂眞·敎雄과 같이 동시기에 동일한 법호를 가지게 된 상황은 어디에서 연유한 것일까.

> ㉰-1) [목종] 9년 6월 戊戌에 天成殿의 鴟吻에 벼락이 쳤다. 왕이 근심하여 자기를 책망하고 肆赦하였다. 효자·순손·의부·절부에게 모두 恩賞을 더하고, 국내의 神祇에게 勳號을 더하였다. 문무 3품 이상에게는 훈직을 더하고 4품 이하는 一級을 올려주었으며 9품 이상으로 入仕하여 20년이 된 자는 改服하였다. 禪敎의 僧徒로 大德 이상은 法號를 더하였고 나이가 60 이상인 자는 職을 더하여 주었는데 차등있게 하였다.[28]
>
> ㉰-2) [예종 3년 2월] 辛卯에 神鳳樓에 거동하여 肆赦하고 이르기를, "(…) 국내의 名山·大川의 神祇에 각각 號를 더하라. 백성으로 나이가 80세 이상과 孝子·順孫·義夫·節婦·鰥寡孤獨·篤癈疾者에게는 賜設分物하라. (…) 冊函과 儀仗을 만든 관리와 冊文을 쓴 관원 및 殿中에서 行禮하였거나 安樂道場都監과 大廟 등에서 [책봉의 일을] 告한 祭享官으로 道俗의 員吏에게는 각각 師銜을 더하여 주라. 여러 執事한 官吏와 잡류에게는 물건을 하사하되 차등있게 하라. (…)"고 하였다.[29]

목종 9년(1006년)에 天成殿에 벼락이 치자 이를 천견으로 여겨 사면령을 내렸다. 사료 ㉰-1)의 사면령 내용 중 승려로서 大德 이상인 자에게 법호를 더해주라는 것이 있다. 통상적으로 사면을 내릴 때 주어지는 효자 등에 대한 포상 등에 덧붙여 관료들에 대한 훈직 부가와 승진 등을 명령하면서 승려에게 법호를 더해주라고 한 것이다. 승계를 가진 승려를 관료와 유사하게 파악하면서 이들에 대한 특혜도 명령했는데 이것이 法號의 하사였다.

사료 ㉰-2)는 예종 3년(1108년)에 자신의 어머니를 明懿太后를 책봉한 후 내

28) 『高麗史』 卷3 世家3 穆宗 9年 6月 戊戌.
29) 『高麗史』 卷12 世家12 睿宗 3年 2月 辛卯.

린 사면의 내용인데, 책봉례에 참여한 관원에 대한 포상 중에 祭享官으로 참여한 道俗의 員吏에게는 각각 師銜을 더하여 주라는 부분이 법호와 관련있다. 道俗의 員吏이므로 속인 관원에게는 직함, 제향관으로 참여한 승려에게는 '師號'를 더하여 주라고 명령한 것이다. 보통 師號를 하사할 때 법호가 함께 주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사료에서 더하여 주라고 했으므로 사호가 없는 승려에게는 법호와 사호가 함께 주어지고, 사호를 이미 보유한 자에게는 법호를 더해주는 방식으로 포상되었을 것이다. 예종 대는 고려 전기의 승계가 완비되어 중국식의 師號보다 고려의 승계를 더 중시하였고[30] 고려의 승계인 大師가 아닌 '師號'의 존재도 고려 전기에 찾기 힘들다. 위의 〈표 1〉에서도 확인되다시피 고려 전기에는 '師號' 형태보다는 승계에 법호가 연칭되어 사용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므로 사료 ㉮-2)의 승려에게 준 師銜은 ㉮-1) 法號의 다른 표현으로 이해해야 한다. 사료 ㉮-1・2)와 같이 국가적 길・흉사의 포상 중에 승려에 대한 법호의 하사가 포함되었다. 이것이 관료들에 대한 훈직 부가와 승진 등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어 승려에 대한 법호의 하사가 관료에게 관직이나 훈직을 더하여 주는 것과 비슷한 포상이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물론 법호가 아닌 방식으로 승려들을 포상한 경우도 있다. 다음의 기사를 보자.

> ㉯-1) [목종 즉위년] 12월 壬寅에 威鳳樓에 행차하였다. 사면하여 효자・순손을 표창하고 죄지은 자의 명예를 회복해주며 질병있는 자를 구제하였다. 文武官과 僧徒는 一級을 더하여 주고 國內의 神祇는 모두 勳號를 더하여 주었다. 인하여 내외에 大酺를 하루 동안 베풀었다. 어머니 황보씨를 높여 王太后로 삼았다.[31]
>
> ㉯-2) [현종 21년] 6월 辛卯에 特赦하여 殊死二罪와 遠地로 유배된 자를 제외하고 모두 용서하였다. 羅城을 축성하고 重光寺를 만든 員吏와 僧俗의 工匠은 모두 階職을 더하여 주고 부역한 자는 금년의 調布를 감면하였으며 여러 州・郡・縣의 부채는 무진년까지 감면하였다. 麟州와 威遠・定戎鎭에 성을 쌓고 서경 순행에 호종하여 공로가 있는 자는 次第職을 더하여 주었고 관직이 없는 자는 물품을 하사하였는데 차등이 있었다.[32]

---

30) 朴胤珍, 앞의 글, 2015.
31)『高麗史』卷3 世家3 穆宗 卽位年 12月 壬寅.
32)『高麗史』卷5 世家5 顯宗 21年 6月 辛卯.

㉮-3) [예종 즉위년 11월] 辛丑에 制하기를, 潛邸 때와 즉위일에 시위한 將校·員吏·僧徒로 공로가 있는 자는 특별히 爵賞을 더하여 주라고 하였다.[33]

사료 ㉮는 ㉯와 유사하게 사면령과 그에 대한 구체적인 특혜를 서술하고 있는데, ㉮-1)에서는 승도에게 一級을 더하여 준다고 하였다. 文武官과 함께 주어진 은택이므로 그 지위의 승진으로 이해된다. 또한 ㉮-2)에서는 羅城과 重光寺를 만드는 데 참여한 僧俗의 工匠에게 階職을 더해준다고 했다. 階職이라고 표현했으므로 승계나 승직을 더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3)은 예종이 즉위 직후에 왕에 오르기 전부터 즉위할 때까지 자신을 시위한 장교·관료·승도에 대한 보답을 爵賞으로 하고 있다. 승도에 대한 爵賞을 爵과 賞으로 구분하여 보면 승계·승직과 같은 지위와 물품을 하사한 것으로 이해되기도 하고, 지위를 상으로 내려 爵賞으로 통칭한 것일 수도 있다. 예종 대는 고려 후기와 달리 승려를 封君하는 식으로 포상하고 있지 않아 爵賞을 지위로 볼 때 승계나 승직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는 법호를 爵賞으로 하사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상과 같이 전국에 사면령이 내려질 때나 황태후의 책봉과 같은 국가적인 의례에 참석한 승려, 국왕이 즉위할 때 이를 호종한 승려, 나성·중광사 축조와 같은 공사에 참여한 승려에 대해서 지위의 승진이라는 특혜나 법호가 하사되었다. 승려가 관리처럼 국가적인 행사에 동원되면 그때마다 포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법호의 하사와 함께 사료 ㉮와 같이 그 지위나 계위를 승격시키는 방식도 있었다. 그러나 승려의 階職을 더하여 주는 방식 혹은 一級을 더해주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

고려 전기의 승계는 6-7단계로 구성되어,[34] ㉮-1)과 같은 국왕의 즉위, ㉯-2)의 태후 책봉, ㉯-1)의 천변에 대한 대응 때마다 승진시킨다면 단순한 경로로 인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몇 번의 승계 승진을 거치면 너무나 빨리 최고의 승계에 도달하게 된다. 포상에 의해 5번만 승계가 상승하게 되면 최상위의 승통이나 대선사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포상이 매년 있

33) 『高麗史』 卷12 世家12 睿宗 卽位年 11月 辛丑.
34) 정비된 고려 전기의 승계는 大德—大師—重大師—三重大師—首座·禪師-僧統·大禪師(—都僧統·都大禪師)로 구성되었다. 許興植, 앞의 글.

지는 않겠지만 승계 승진의 방법으로 이를 수여하면 쉽게 최상의 승계를 보유하게 되므로 이 같은 방법을 기피했을 것이다. 승계 대신 승직의 승진으로 대신한다고 해도 문제가 생긴다. 승계보다는 많지만, 승직도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 위와 같은 포상 때마다 승직을 변동시키는 것도 무리이다. 물론 ㉮-1)처럼 大德 이상의 승계를 가진 승려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포상은 많지 않고 ㉯-3)과 같이 그 행사에 직접 참여한 이들에 한정한 포상이 다수였겠지만, 이러한 포상의 누적은 승계와 승직으로만 했을 경우 그것의 포화 상태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

승정의 문제가 계속 지적된 고려 후기의 일이기는 하지만, 충선왕은 즉위교서에서 승려의 批職이 많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하면서 승려를 포상할 일이 있으면 法號만을 수여하라고 하였다.[35] 이 역시 승직이나 승계 혹은 封君 등으로 승려를 포상할 경우 생기는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포상 때마다 승계를 승진시키면 빠르게 최고 승계에 도달하게 되고 이는 승계의 권위를 떨어뜨리며 그 계서성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승직 역시 한정되어 있어 이의 반복적 하사는 문제가 생긴다.

반면 법호의 하사는 한정적인 승계·승직보다는 그 해당자를 늘릴 수 있는 용이한 면이 있다. 또한 승계나 승직처럼 실질적인 권력을 주는 방법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승려의 권위를 높이는 방법이므로 국가와 승려 양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식이 되었다. 법호 용어의 구성 자체가 승려의 종교적 威信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의 누적을 의미있게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국가적 행사에 다수의 승려에게 주어지는 법호를 개별적으로 작명하여 주는 것은 힘들었을 것이다.

㉰-1) [문종 8년] 5월 己卯에 國內의 名山·大川의 神祇에게 聰正 2자의 功號를 더하여 주었다.[36]

㉰-2) [문종 33년] 여름 4월 甲辰에 國內의 名山·大川의 神祇에게 知幾 2자

35)『高麗史』卷33 世家33. "[忠宣王 즉위년 정월] 戊申, 敎曰, (…) 一諺曰僧多批職亡國敗家, 今批職之數過多, 令有司褒貶申聞, 今後有法德殊勝者方加法號. (…)"
36)『高麗史』卷7 世家7 文宗 8年 5月 己卯.

호를 더하여 주었다.[37]

㉮-3) [고종 40년 10월] 戊申에 國內의 名山과 耽羅의 神祇에게 각각 濟民의 호를 더해주고 大廟 9室과 19陵 모두에게 尊謚를 더해 올렸다.[38]

사료 ㉮에서 국내의 명산과 대천의 신령에게 功號 등을 줄 때 동일한 명칭을 대상 전체에게 주고 있다. ㉮-1)의 대상이었던 국내 명산과 대천의 신령이 ㉮-2)에서도 중복되어 호칭을 받게 되면 여러 개의 공호가 누적되었다. 이것이 계속되면 여러 자로 이루어진 호칭을 가진 명산·대천이 존재하게 되고 이 중에는 여러 글자가 중복될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승려의 법호도 개별적인 공로에 따라 하사했겠지만, 사료 ㉬와 같이 특정 행사에 참여한 승려 모두에게 법호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그럴 때 ㉮와 같이 동일한 법호가 부여되기도 했다. 또는 특정 업적에 대한 법호를 동일하게 작명하여 주었을 수도 있다. 즉 해당 연도의 왕실 법회에 참여하면, 이번의 법회에 참여한 승려는 어떠한 법호를 준다는 식이다. 실제로 사료 ㉯·㉰나 樂眞·敎雄과 같이 동시기에 동일한 법호를 가진 사례가 다수 존재했다. 이는 어떤 방식으로든 같은 법호를 비슷한 시기에 여러 명의 승려에게 하사했음을 알려준다. 법호는 승려들에게 勳號와 같은 의미가 있었던 것이다. 앞서 ㉬-1)과 ㉮-1)에서 국가 제사의 대상인 神祇에게 내리는 명칭을 勳號나 功號라고 한 것처럼 승려에게 그 공로에 대한 포상으로 주는 호칭 또한 勳號의 성격을 가졌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화엄종 소속이나 유가종 소속의 승려들이 공통된 법호를 가지고 있었던 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특정 집단 내의 승려에게 동일한 법호를 하사했을 가능성도 크다.

물론 시간적 차이를 가지고 동일한 법호가 하사된 사례도 〈표 2〉에서 찾아진다. ①弘道, ③廣濟, ⑪廣智를 보유했던 승려의 활동 시기는 많은 차이가 있어 이들은 동시에 해당 법호를 보유하지 않았다. 이후의 과제로 미루어 놓은 고려 후기 법호 사례까지 감안하면 시간적 격차가 있으면서 동일한 법호를 가진 사례가 더 많이 증가한다. 이는 법호를 미리 작명한 후 그에 합당한 공로를 세운

37) 『高麗史』 卷9 世家9 文宗 33年 夏四月 甲辰.
38) 『高麗史』 卷24 世家24 高宗 40年 10月 戊申.

승려에게 하사하는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 문제는 고려 후기 사례까지 함께 살펴봐야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추후 과제로 미룬다.

한편 〈표 1〉로 정리된 고려 전기의 법호 보유 승려는 大德 이상의 승계를 가진 이들이었다. ㉮-1)에서도 대덕 이상에게 법호를 하사하라고 하였다. 승과에 합격하여 승계를 보유한 승려가 법호를 받을 수 있는 경계선이었다고 생각된다.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 한 고려 전기 법호 하사 대상자는 승계를 보유한 승려뿐이다. 물론 승계를 가졌다고 모든 승려가 법호를 가졌던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한 바대로 『大寶積經』 사경의 발원문에는 大師로 지칭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호를 가진 승려와 그렇지 않은 이가 있었다. 그리고 「奉先弘慶寺碣記」에서는 대덕이 대사보다 더 많은 법호를 보유하기도 하였다. 이는 법호가 승계의 승진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려준다. 그럼에도 해당 승려의 비문이나 묘지명에 법호가 기록되고, 佛事 참여자 명단에 법호를 함께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법호가 그 승려의 지위를 표시하는 하나의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고려 전기에 고려만의 독특한 제도인 승계와 함께 승려들이 자신의 직함으로 '賜紫'나 '賜紫沙門'을 사용했던 것[39]처럼 법호도 해당 승려의 위치를 보여주는 하나의 방식이었다. 당연히 2자 법호보다는 그 이상의 법호를 하사받은 자가 더 높은 권위를 가졌을 것이다. 이러한 법호는 중국의 경우 大師인 '師號'와 함께 연칭되었지만, 고려 전기는 師號보다 고려만의 僧階를 더 중시하였기 때문에 승계 앞에 붙여 표시하였다.

법호를 받기 전 승려는 자칭할 때나 남에 의해 호칭될 때 법명을 사용해야 한다. 즉 沙門 누구 혹은 僧 누구라는 식으로 표현했을 것이다. 그러나 법호를 받게 되면, 그것을 법명과 함께 사용했다. 전근대 사람들이 이름의 사용을 피하고 字나 號로 호칭하거나 성씨에 그의 관직 등을 연칭해서 지칭했던 것처럼 승려도 법명 대신 법호를 사용하는 방식을 선호했을 것이다. 〈표 1〉 32번 曇眞의 사례에서 보이듯이 그는 중국의 기록에서 廣潤大師 曇眞이라고 호칭되었다.[40]

---

39) 朴胤珍, 앞의 글, 2015.

40) 浙江大學韓國硏究所 編著, 「宋杭州南山慧因敎院晋水法師碑」, 『十至十四世紀中韓關係史料彙編』, 學苑出版社, 1999; 「敕賜杭州慧因敎院記」, 같은 책.

송나라 승려 元炤에게서 의천에게 온 편지 내용에서는 낙진을 慈應樂眞이라고 표기하였는데[41] 慈應이라는 법호를 가진 樂眞이라는 의미이다. 『阿彌陀經通贊疏』 권말에서는 이 책의 유통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廣祐僧統 釋韶顯이 썼다'라고 기록하였다.[42]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의천은 생전에 祐世僧統으로 불렸다.

더욱이 제자와 같이 卑屬에 속하는 사람들은 자신과 종교적으로 尊屬 관계인 이들의 법명을 부르는 것이 불편하다. 사후에는 시호로 호칭할 수 있겠지만, 이도 시호를 받아야 가능하다. 이럴 때 가장 용이한 방법이 법호의 사용이었다. 승계로 호칭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해당 인물을 구분하는 것이 힘들었으므로 법호를 승계와 연칭하는 방식을 선택했을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보면 고려식의 승계와 함께 법호를 연칭해서 사용한 것은 해당 승려를 사회적으로 호칭하는 하나의 방식이었으며, 법명만을 사용하는 것보다 그들을 존숭하는 하나의 방법이었다. 중국에서 師號를 통해 해당 승려를 존칭하고 국가적 고승으로 대우했듯이 고려 또한 법호와 승계를 연칭한 방식으로 그 스님이 국가적 대우를 받는 이라고 표현했던 것이다. 이는 승계처럼 계위를 가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여러 개의 법호를 누적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승려의 공적 지위를 보증해주었다고 이해된다. 법호가 功號나 勳號와 같은 의미를 가진 만큼 국가에서 하사한 법호의 보유와 누적은 이를 가진 승려의 지위를 보장해주었다. 게다가 특정 법회에 참여한 이에게 특정 법호를 하사하는 방식마저 있었다면, 법호를 통해 해당 승려가 참여한 법회나 공로를 파악할 수도 있어 그의 공로를 확인하는 방법도 되었을 것이다.

## 4. 맺음말

고려 전기 국가에서 승려들에게 하사하였던 法號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표 1〉과 〈표 2〉에서 법호를 보유한 승려 46명과 중복되어 사용된 법호 28

41) 「大宋沙門元炤書 第一」, 『大覺國師外集』 권2, 韓國佛教全書 권4, 572b6-b8면. "闍梨書, 賈相公注金剛經, 洎遺教經節要七部, 附慈應樂眞, 已下習講, 各亘檢至."

42) 『阿彌陀經通贊疏』 卷3 권말, 大正新脩大藏經 권37, 347c11-12면. "時大安五年己巳二月晦日記, 海東大慈恩玄化寺住持廣祐僧統釋韶顯題."

개를 확인하였다. 이는 무신정권기 때 만들어진 사료 중 고려 전기의 내용을 생략한 것으로 고려 전기 법호 보유 승려는 이보다 더 많았다. 더불어 고승 비문이나 묘지명에서 그 주인공인 승려의 법호를 모두 표기하지 않았던 사실에서도 현재 확인된 내용보다 더 많은 법호의 사례가 존재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추가 자료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지만, 〈표 1〉의 내용만으로도 고려 전기 법호의 대략적인 사례와 운영을 살펴보기에는 충분하다.

고려 전기의 법호는 중국의 '師號'가 대사라는 직함과 법호를 하사하는 방식이었던 것과 관련되어 보인다. 다만 고려 전기는 중국식 '師號'보다 고려의 독특한 제도인 승계를 중시했기 때문에 법호와 승계를 연칭하여 사용하였다. 고려 법호의 다른 특징으로는 중국과 비교해서 많은 법호가 사여되었다는 것인데, 海麟의 34자가 사료상 확인되는 고려 전기 법호의 최대수이다.

한편 법호는 法稱이나 懿號로도 불렸다. 이는 법호에 대해 해당 승려의 덕행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표현이나 큰 덕을 가진 자만이 가질 수 있다는 언급을 통해 알 수 있다. 게다가 법호의 하사가 국가적인 의례나 불교 행사 때 내려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勳號·功號와 같은 성격이 있었다. 법호 자체가 불교적 용어로 작명되어 해당 승려의 종교적 권위를 높여주는 명예적 호칭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다수에게 일시에 법호가 사여되면서 동일한 법호를 가진 승려가 동시기에 활동하기도 했다. 또한 시간적 차이를 가지고 부여된 동일한 법호는 국가가 어떠한 공로에 특정 법호를 하사한다는 원칙을 가졌을 가능성도 유추하게 한다.

현재 확인된 사료에 근거한다면 법호 수여의 대상자는 최하위 승계인 大德 이상이었다. 승과에 합격하여 국가로부터 승계를 받은 승려들이 법호의 대상자였다는 점은 법호 또한 승계처럼 국가가 공적으로 통할하는 승려에게 주는 지위의 하나였음을 알려준다. 그렇다고 大德 이상 모두에게 법호를 무조건적으로 준 것은 아니다. 『大寶積經』 사경 발원문이라는 동일한 자료에서 승계가 모두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호를 가진 이와 그렇지 않은 이의 기록이 함께 있다는 것은 후자에게는 법호가 없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는 법호가 공로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勳號였음을 보여준다.

국왕의 즉위나 태후의 임명과 같은 국가적 의례 참석자나 사면령이 내려지는 시기에 관료들에 대한 포상과 함께 승려에게는 승계나 승직을 주기도 했지만, 이와 같은 보상은 한정적인 승계의 단계와 승직의 수 때문에 한계를 가졌다. 반면에 법호는 여러 차례 하사된다고 해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 물론 계서적인 승계나 실질적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승직에 비해서 법호가 가지는 실체적인 이득은 적었다. 그러나 국가가 법호를 보유한 승려를 우대하고 누적된 법호를 가진 승려를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서 사회적으로 존숭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면 한정적이기는 하지만 승려의 지위로 의미가 있었다. 이는 제한된 승직 수라는 문제나 승계 승진을 위한 일정한 연수를 대기해야 하는 난제를 해결하면서 관료에 비해 부족한 승급의 기회를 승려에게 만들어주었다고 이해된다.

승려들은 법명을 대신할 수 있는 법호를 보유하게 되면, 법명 대신 혹은 법명 앞에 법호를 붙여 사용함으로써 자신이 국가에 공훈을 세운 승려임을 드러내고 사회적 존중을 기대했다. 법호 하사 주체인 국가가 이 법호에 대한 권위를 인정해줌으로써 僧階·僧職과 함께 고려시대 승려의 또 다른 공적 지위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법명으로 고위 승려를 호칭하는 것을 기피했을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와도 연결되어 법호는 법명을 대신하여 해당 승려를 지칭하는 이름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고려 전기 법호는 승직이나 승계와 함께 승려에게 국가가 하사한 공적 지위였다. 승계를 가진 승려에게 하사하여 승과 합격자 이상이라는 공통된 기준을 가지고 있었지만, 승계 승진과 상관없이 공훈으로 인정될만한 일에 참여하면 법호를 하사받았다. 이 법호의 누적은 해당 승려의 업적을 공식적으로 알릴 수 있는 하나의 상징이었다. 단순한 승계의 구조와 부족한 승직의 수라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권력과 권위에 대한 승려의 욕구를 해결해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법호 제도의 운영은 승려에 대한 대우와 관리 차원의 여러 정책이 고려시대에 실시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법호는 고려 후기 내내 사용되었으며, 이는 일정 정도 조선시대 제도와도 연결되었던 것 같다. 향후에 고려 후기 법호의 사용과 변화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 ▮ 참고문헌

『高麗史』, 『高麗史節要』, 『大覺國師文集』, 『大宋僧史略』(『大正新脩大藏經』 권54), 『東文選』, 『三國遺事』, 『阿彌陀經通贊疏』(『大正新脩大藏經』 권37), 『朝鮮金石總覽』, 『韓國金石全文』, 『弘贊法華傳』(『卍續藏經』 第149 中國撰述 史傳部).

『高麗續藏雕造攷·新編諸宗教藏總錄』, 한국학자료원, 1985.
金龍善, 『高麗墓誌銘集成』,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2012.
浙江大學韓國硏究所 編著, 『十至十四世紀中韓關係史料彙編』, 學苑出版社, 1999.
趙東元, 『韓國金石文大系』 1-6, 원광대 출판국, 1979-2000.
黃壽永, 『黃壽永全集』 4—금석유문, 혜안, 1999.

권희경, 『고려의 사경』, 글고운, 2006.
南權熙, 『高麗時代 記錄文化 硏究』, 淸州古印刷博物館, 2002.
朴胤珍, 「高麗前期 '賜紫沙門'의 의미와 역할」, 『역사민속학』 제49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15, 151-180면.
_____, 「고려 후기 '師號'의 운영과 그 특징」, 『歷史敎育』 제139집, 역사교육연구회, 2016, 149-173면.
許興植, 「高麗의 佛敎制度와 그 機能」, 『高麗佛敎史硏究』, 일조각, 1986.

郭學勤, 「論北宋佛道二教管理制度」, 『盐城师范学院学报』(人文社会科学版) 2013年 1期(第33卷 139號), 盐城师范学院, 2013, 23-26面.
謝重光·白文固, 『中國僧官制度史』, 青海人民出版社, 1990.
王德朋, 「金代僧尼名號探析」, 『學習與探索』, 2014年 7期(第228期), 黑龙江省社会科学院, 2014, 152-155面.

【Abstract】

## The Features of the Use and Management of Precept Name System during the Early Goryeo Era

Park, Yun-Jin*

Abstract In the early Goryeo era, a precept name (beopho) was part of the official status granted to a Buddhist priest, along with the duty and rank of the monk. The presentation of a precept name is related to China's eulogistic title system that included the title of 'Great Master' (dashi). However, as greater importance was laid on Goryeo's own unique Buddhist priest ranks than to the Chinese-style eulogistic titles during the era, precept names and ranks were used in an interconnected way.

A precept name, or 'beopho' was also referred to as 'beopching' or 'uiho', and had the same significance as 'hunho' or 'gongho', a title given to those who made great contributions to the nation. Based on the historical sources identified so far, the eligibility for these precept names was limited to Buddhist priests with the rank of 'daedeok', which was the lowest, or above. As precept names were sometimes granted to a large number of priests at once, some of them were given the same names while they were active during the same period of time. Also, from the fact that the same precept names were granted at a regular interval, it can be presumed that the state had the principle for the presentation of specific precept names for certain achievements.

On the occasion of major state rituals such as the enthronement of the king or the appointment of the queen, or a decree of amnesty, government officials were often given awards while Buddhist priests were assigned with official duties or ranks. However, the granting of these rewards was restricted due to the limited numbers of the duties and ranks allowed to monks. On the other hand, precept names did not lead to any major problems even if they were granted many times. As long as the state was willing to create a social atmosphere where monks with a precept name were better

* Lecturer, Dept. of Korean History, Korea Univ.

treated and those who had been granted several precept names were respected, precept names had significance as an element determining a monk's status.

Keywords: Goryeo, Beopho (Precept Name), Saho (a title bestowed to a priest, master title), Seunggye (Buddhist priest ranks), Great Master (leader).

접수일: 2020.03.15. ‖ 심사일: 2020.04.10. ‖ 게재확정일: 2020.05.06.